

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 절차 규칙 이의 제기

1. 목적
2. 정의
3.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결정
4. 이의 제기 요청
5. 이의 제기 기각
6. 빠른 이의 제기
7. 비공식 해결
8. 심의회 전 협의
9. 심의회 통지
10. 심의회
11. 검토 기준
12. 이의 제기 결정
13. HHS 에 대한 Exchange 결정 이의 제기
14. 심의회 전 협의 또는 심의회 일정 조정
15. 항소인의 대리인 지정
16. 통역자
17. 심의회 요청 철회
18. Exchange 에 문서 송달하기

1. 목적

본 절차 규칙은 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 (WAHBE, 또는 Exchange)가 발급한 자격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합니다. 이 규칙은 Exchange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관장하는 45 CFR subpart F 의 연방 규칙을 적용합니다. 본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령이나 규칙의 요건이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의도를 갖지 않습니다. 본 규칙과 45 CFR part 155, subpart F 연방 규칙이 충돌할 경우 연방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.

권한: 45 CFR part 155, subpart F

2. 정의

본 절차 규칙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합니다.

- (1) "이의 제기 기록 (Appeal record)"은 이의 제기 결정과 모든 서류, 절차에서 제출된 요청, 심의회를 실시한 경우 심의회 증언 기록, 또는 심의회에서 발생한 요지를 포함한 공식 보고서, 심의회에서 소개된 모든 증거를 뜻합니다.
- (2) "이의 제기자 (Appellant)"는 유효한 이의 제기 요청을 제출한 신청인, 가입자, 고용주, 또는 직원을 뜻합니다.
- (3) "완전 재검토 (De novo)"는 사례에 대한 이전 결정을 참조하지 않는 이의 제기 검토를 뜻합니다.
- (4) "Exchange"는 Chapter 43.71 RCW 에 따라 설립된 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 를 뜻합니다.
- (5) "정당한 사유 (Good cause)"는 출두를 하지 않거나,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질적 사유나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뜻합니다. 정당한 사유는 질병,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, 해당 개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통지서가 작성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.
- (6) "주재자 (Presiding officer)"는 최초 자격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Exchange 에 의해 본 절차 규칙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뜻합니다.
- (7) "무효화 (Vacate)"는 이전 조치를 보류함을 뜻합니다.
- (8) "서면 통지 (Written Notice)"나 "서면 (in writing)"은 우편이나 팩스, 이메일로 전달되었음을 뜻합니다.

3.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결정

- (1) 개인 이의 제기: 이의 제기자나 가입자는 다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- (a) 보험료 세금 공제의 선지급금, 비용 분담 삭감액 등을 포함한 공인 건강보험 플랜 최초 가입 신청에 대한 자격 결정

- (b) 보험료 세금 공제의 선지급금, 비용 분담 삭감액 등을 포함한 현재 공인 건강보험 플랜 가입자에 대한 자격 결정
 - (c) 보험료 세금 공제의 선지급금, 비용 분담 삭감액 등을 포함한 특수 가입 기간 중 신청에 대한 자격 결정
 - (d) Exchange 가 제때 자격 결정 (결정 또는 재결정) 을 통지하지 않음.
 - (e) 45 CFR §155.605 에 따라 적용되는 개인 필수 보험 면제 자격 결정
- (2) 고용주 이의 제기: 고용주는 다음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(a) 고용주가 최소 필수 보장을 제공하고 최소 가격 기준을 준수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음, 또는
 - (b) 고용주가 제공하는 최소 필수 보장, 최소 가격을 가진 플랜을 직원이 감당할 수 없음.

권한: 45 CFR section 155.505; 45 CFR section 155.555; 45 CFR section 155.605

4. 이의 제기 요청

- (1) 이의 제기는 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90 일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.
- (2) 이의 제기는 다음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(a) 미국 우편, Exchange 자격 통지에 포함된 이의 제기 양식을 양식에 명시된 주소로 송부함.
 - (b) 이메일, appeals@wahbexchange.org 로 이의 제기 요청을 이메일로 전송함. 이메일 요청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, 전화번호, 이의를 제기하는 자격의 결정일, 이의 제기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.
 - (c) 전화, Exchange, 1-855-859-2512 (무료)로 전화.

- (d) 팩스, 360-841-7653 으로 이의 제기 요청 팩스 전송.
 - (e) 인터넷, www.wahbexchange.org 에서 온라인 이의 제기 양식 작성.
 - (f) 인편 전달, 또는 상용 택배 서비스를 통해 Exchange, 810 Jefferson Street SE, Olympia, Washington 98501 로 전달.
- (3) Exchange 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(a) 요청이 있을 경우, 신청인이나 가입자가 이의 제기를 요청하도록 지원합니다.
 - (b) 신청인이나 가입자의 이의 제기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.
 - (c) 이의 제기 요청이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(워싱턴주 보건사회부), Washington State Health Care Authority (워싱턴주 건강관리국), 또는 Washington State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(워싱턴주 행정심의회실) 에 잘못 전달되었더라도 다른 부분이 유효하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(4) Exchange 는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후,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다음을 보냅니다.
- (a) 이의 제기 수령을 확인하는 통지서,
 - (b) 심의회가 필요한 경우, 심의회 전 협의 날짜와 시각을 포함한 이의 제기 절차 일정,
 - (c) 이의 제기 중 보험료 세금 공제의 선지급금, 비용 분담 삭감액에 대한 자격 정보,
 - (d) 이의 제기 중 이의 제기 신청인이 국세청 (Internal Revenue Service) 의 소득세 신고 조정 대상인 경우, 신청인을 대신하여 지급된 보험료 세금 공제의 선지급금에 대한 설명,
 - (e) 절차 규칙 16 에 설명된 연방법에 따른 접근성 지원 요청 또는 통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,
- (5) 이의 제기 신청인은 심의회 전과 심의회 중 합당한 시기에 심의회에서 Exchange 가 이용하는 모든 문서와 기록을 포함한 이의 제기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.

- (6) Exchange 가 본 섹션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경우, Exchange 는 반드시 다음을 실시해야 합니다.
 - (a) 신청인이나 가입자에게 이의 제기 요청이 승인되지 않았음과 그 사유를 알리는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, 그리고
 - (b)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여 수정된 이의 제기 요청을 유효한 요청으로 취급합니다.

- (7) Exchange 가 이의 제기인의 Washington Apple Health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으면, Exchange 는 이를 안전한 이의 제기인 Healthplanfinder 신청 전자 업로드 방식을 통해 Health Care Authority(건강관리국)로 전송합니다.

권한: 45 CFR section 155.520

5. 이의 제기 기각

- (1) 주재자는 다음의 경우 이의 제기를 기각해야 합니다.
 - (a) 이의 제기가 절차 규칙 3 에 명시된 사유 중 한 가지에 따라 요청되지 않은 경우.
 - (b) 이의 제기인이 자격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.
 - (c) 이의 제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심의회 전 협의나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.
 - (d) 이의 제기인이 절차 규칙 17(1)에 따라 이의 제기를 철회한 경우.
 - (e) 이의 제기인이 이의 제기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.

- (2) Exchange 는 이의 제기인에게 다음을 명시한 통지서를 제때 전달해야 합니다.
 - (a) 기각 사유.
 - (b) 기각이 이의 제기인의 보험료 세금 공제의 선지급금, 및 비용 분담 삭감액 자격에 미치는 영향.
 - (c) 이의 제기인이 기각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기각을 무효화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.

- (d) 이의 제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방법.
- (3) 기각 무효화: 이의 제기인이 기각을 무효화할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주재자는 기각을 무효화하고 이의 제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.
- (a) 요청서는 반드시 이의 제기를 기각하지 말아야 할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.
 - (b) 이의 제기인은 기각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기각 무효화를 요청해야 합니다.
 - (c) 이의 제기인은 서면으로 기각 무효화 요청에 관한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(d) 거부 시, Exchange 는 이의 제기인에게 기각 무효화 요청을 거부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.
 - (e) 주재자가 기각을 무효화할 경우, Exchange 는 이의 제기인에게 절차 규칙 4(4)의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.

권한: 45 CFR section 155.530

6. 빠른 이의 제기

- (1) 이의 제기인은 일반 이의 제기 절차 시 다음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건강 관리 서비스가 필요함을 증명하여 빠른 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(a)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
 - (b) 최대한의 기능 달성, 유지, 또는 회복능력
- (2) 빠른 이의 제기는 절차 규칙 4 에 규정된 일반 이의 제기와 같은 방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.
- (3) 빠른 이의 제기 요청 시, 이의 제기인은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.
 - (a) 빠른 이의 제기 사유에 대한 증거
 - (b) 자격 결정이 올바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

- (4) 주재자가 빠른 이의 제기 요청을 허용하면, Exchange 는 반드시 Exchange 가 빠른 이의 제기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최종 이의 제기 결정을 발급해야 합니다.
- (5) 주재자가 요청을 거부한 경우, Exchange 는 반드시 다음을 실시해야 합니다.
 - (a) 표준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처리하고 요청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 제기 결정을 발급합니다.
 - (b)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, 가능하다면 즉시 전자 통지나 구두 통지를 통해 거부에 대해 알리고, 구두로 통지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를 후속 제공합니다. 거부 통지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-
 - (i) 거부 사유
 - (ii) 이의 제기 요청이 표준 90 일 절차로 이전될 것을 알리는 설명
 - (iii) 절차 규칙 4(4) 정보를 포함한 표준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 신청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

권한: 45 CFR section 155.540

7. 비공식 해결

- (1) Exchange 는 다음을 포함한 비공식 해결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 해결을 모색합니다.
 - (a) 이의 제기 요청을 받은 후, Exchange 는 자격 기록과 이의 제기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심의회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요청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. 이의 제기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대리인 역시 Exchange 에 비공식 해결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(2) Exchange 와 이의 제기 신청인이 이의 제기를 해결하는데 합의할 경우, 비공식 해결 합의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이의 제기 신청인은 서면이나 전화로 Exchange 에 이의 제기를 철회함을 통지해야 합니다.
- (3) 비공식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의 제기 신청인은 심의회 전 협의 및/또는 심의회 권리를 갖습니다.

권한: 45 CFR section 155.535

8. 심의회 전 협의

- (1) 주재자는 심의회 전 7 일 이내에 심의회 전 협의를 실시합니다.
- (2) 심의회 전 협의에서 Exchange 와 이의 제기 신청인, 또는 이의 제기 신청인의 대리인은 다음을 고려합니다.
 - (a) 법률 문제를 포함하여 심의회에서 다룰 문제
 - (b) 심의회에서 증언을 할 증인과 증인 수의 제한 또는 증언 내용
 - (c) 심의회에서 제출할 서류
 - (d) 심의회의 비공식 합의 가능성
 - (e) 기타 심의회의 효율적인 진행에 관한 사안
- (3) 심의회 전 협의는 주재자가 전화 또는 기타 Exchange 와 이의 제기 신청인이 합의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전자 기록됩니다.
- (4) 주재자는 주재자의 결정 및 Exchange 와 이의 제기 신청인 사이의 합의를 포함하여 심의회 전 협의에서 취한 조치를 규정한 심의회 전 협의 명령을 입력합니다.
- (5) 이의 제기 신청인이 충분한 및/또는 합의를 받았고 주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, 심의회 전 협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본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이의 제기 신청인의 적절한 통지, 계속, 심의회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.

9. 심의회 통지

- (1) Exchange 가 심의회 일정을 정한 경우,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심의회 날짜로부터 15 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 통지서는 심의회 날짜와 시각, 진행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. 원격 회의 시, 통지서에 심의회 참여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접속 코드, 개인식별번호 (PIN) 를 명시해야 합니다.
- (2) 심의회 통지에는 신청인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, 이의 제기가 절차 규칙 5 에 따라 기각됨을 명시해야 합니다.
- (3) 심의회 통지는 연방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 신청인이나 증인에게 접근성 지원이나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, 신청인이나 증인에게 무료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됨을 명시해야 합니다. 통지서는 반드시 절차 규칙 16 에 따라 필요한 접근성 지원이나 통역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양식을 포함해야 합니다.

권한: 45 CFR sections 155.205, 155.535

10. 심의회

- (1) 심의회는 주재자가 전화로 진행합니다. 심의회는 직접 참여하거나 Exchange 와 이의 제기 신청인이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심의회는 전자 기록됩니다.
- (2) 심의회는 이의가 제기된 자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주재자가 진행합니다.

- (3) 심의회에서 이의 제기 신청인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.
 - (a) 한 명 이상의 증인의 관련 증언을 제시합니다.
 - (b) Exchange의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를 제시합니다.
 - (c) 불리한 증언에 반박하거나 반대 심문하고 증거를 부인합니다.
 - (d) 방해받지 않고 주장을 제기합니다.

권한: 45 CFR section 155.535

11. 검토 기준

주재자는 반드시 이의 제기 기록을 완전 재검토해야 합니다. 최초 자격 결정을 참고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심사해야 합니다.

권한: 45 CFR section 155.535

12. 이의 제기 결정

- (1) 절차 규칙 6에 따른 빠른 이의 제기를 제외하고, 주재자는 Exchange가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 결정을 발급해야 합니다.
- (2) 이의 제기 결정은 기록의 증거만을 토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,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.
 - (a) 이의 제기 신청인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평이한 말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한 결정서
 - (b) 관련 사실의 요약
 - (c) 결정을 뒷받침하는 규정을 포함한 법적 근거 명시
 - (d) 결정의 효력일
 - (e) 이의 제기 신청인의 Exchange 결정을 U.S.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(미국 보건복지부)에 다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설명

권한: 45 CFR section 155.545

13. HHS 에 대한 Exchange 결정 이의 제기

- (1) 고용주 이의 제기를 제외하고, 이의 제기 신청인이 Exchange 의 이의 제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이의 제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(미국 보건복지부, HHS)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(2) Exchange 는 이의 제기 신청인의 요청 시 적절한 양식 사본을 제공하거나, 이의 제기 신청인이 <https://www.healthcare.gov/marketplace-appeals/appeal-form-instructions> 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의 제기 신청인은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으로 송부해야 합니다.

Health Insurance Marketplace
Attn: Appeals
465 Industrial Blvd
London, KY 40750-0061

또는 보안 팩스를 통해 이의 제기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1-877-369-0130.

- (3) Exchange 는 반드시 보안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본 이의 제기 요청서와 이의 제기 신청인의 기록을 HHS 에 전송해야 합니다.

권한: 45 CFR sections 155.505 및 155.545

14. 심의회 전 협의 또는 심의회 일정 조정

- (1) 이의 제기 신청인은 Exchange 에 심의회 전 협의나 심의회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(2) 일정 조정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심의회 전 협의나 심의회 일정 조정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. 주재자는 서면 요청을 심사하고 즉시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
- (3) 이의 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일이 Exchange 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, 심의회 전 협의나 심의회 일정 조정 요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.

권한: 45 CFR sections 155.505 및 155.535

15. 항소인의 대리인 지정

- (1) 이의 제기 신청인은 변호사나 가족, 조직 등 개인을 지정하여, 절차 규칙 4 에 따른 이의 제기 요청 등 이의 제기 절차 중에 본인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(2) 이의 제기 신청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.
 - (a) Exchange 가 제공한 이의 제기 양식에 작성하고 이의 제기 신청인이 서명합니다.
 - (b) 이의 제기 신청인이 서명한 다른 서류에 작성하여 지정합니다.
 - (c) Healthplanfinder 자격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합니다.
 - (d) 공식 대리인이 워싱턴주에서 변호사업을 하도록 승인된 변호사인 경우, 미국 우편이나 이메일로 송달한 통지서를 통해 지정합니다.
 - (e) 후견인 명령 또는 위임장 등 이의 제기 신청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법적 서류.

권한: 45 CFR sections 155.227 및 155.505

16. 접근성 지원/통역

- (1) 연방 규정에 따라 Exchange 이의 제기 절차는 § 155.205(c)의 접근성 규정을 준수합니다. 이에 따라 신청인과 가입자는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은 개인이 제 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.
 - (a) 장애가 있는 개인,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(미국 장애인법) 및 Rehabilitation Act(재활법) 504 조에 따라 접근성을 갖춘 웹사이트와 보조 수단 및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

- (b)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에게 무료로 다음과 같은 언어 서비스를 제공:
 - (i) 150 가지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는 전화 통역 서비스를 포함한 통역,
 - (ii) 번역, 및
 - (iii) 언어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표시한 영어 외 15 개 언어의 태그라인
 - (c) 개인에게 이러한 서비스의 가용성을 알리고 서비스 접근 방법을 알립니다
- (2) Exchange 이의 제기 양식에는 접근성 지원이나 통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표시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.
 - (3) Exchange 관련 당사자나 직원의 친지는 Exchange 이의 제기 절차에서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.
 - (4) 주재자는 접근성 보조 도구나 통역이 정확하고 효과적인지, 접근성 또는 통역 서비스를 요청한 이의 제기 신청인이나 증인을 공정하게 지원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. 절차 중 언제든지 주재자는 접근성 보조 도구나 통역이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통역이나 기타 접근성 보조 도구를 퇴거시키고, 더 우수한 통역이나 접근성 보조 도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- (5) 주재자는 절차 중에 통역이 말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.

권한: 45 CFR sections 155.205 및 155.545

17. 심의회 요청 철회

- (1) 이의 제기를 요청한 사람은 이의 제기 절차 중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이의 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철회 요청은 반드시 다음을 통해 실시합니다.

- (a) Exchange 가 제공하고 이의 제기 신청인이 서명한 양식, 또는 다른 서면이나 팩스, 이메일 통지서를 통해
 - (b) Exchange 가 이의 제기 신청인의 증언을 위증 시 처벌 조건 하에 모두 기록하고 Exchange 가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서면 철회 확인서를 보낸 경우, 전화를 통해
 - (c)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, 주재자가 구두로
- (2) Exchange 이의 제기를 요청한 사람은 Washington Apple health 의 자격 거부 검토를 받기 위해 심의회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철회 요청은 반드시 다음을 통해 실시합니다.
- (a) Exchange 가 제공하고 이의 제기 신청인이 서명한 양식, 또는 다른 서면이나 팩스, 이메일 통지서를 통해
 - (b) Exchange 가 이의 제기 신청인의 증언을 위증 시 처벌 조건 하에 모두 기록하고 Exchange 가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서면 철회 확인서를 보낸 경우, 전화를 통해
 - (c)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, 주재자가 구두로

Exchange 는 철회 신청을 받으면 철회된 이의 제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Health Care Authority(건강관리국)에 전달해야 합니다.

- (3) 서면 철회를 위해 제공되는 양식은 철회 사유를 포함해야 하며, 이의 제기 신청인이 이의 제기 신청과 심의회 권리를 철회함을 인정하여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.
- (4) 이의 제기를 철회할 경우, 주재자는 절차 규칙 5 에 따라 이의 제기 철회를 명령해야 합니다.

권한: 45 CFR sections 155.505 및 155.530

18. Exchange 에 문서 송달하기

- (1) 본 절차 규칙이나 주재자 명령에 따라 이의 제기 신청인이 문서나 기타 정보를 Exchange 에 제공해야 할 경우, 이의 제기 신청인은 다음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 - (a) 미국 우편, WAHBE Appeals Program, P.O. Box 1757, Olympia, WA 98507-1757.
 - (b) 이메일, appeals@wahbexchange.org.
 - (c) 팩스, 360-841-7653
 - (d) 인편 전달, 또는 상용 택배 서비스, 810 Jefferson St SE, Olympia, WA 98501-1417

- (2) 본 절차 규칙이나 주재자 명령에 따라 Exchange 가 문서를 수령해야 할 경우, 문서가 일반 업무 시간 중에 Exchange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